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4일 23시 48분



목차

목차	2
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 문화예술과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2023.04.12 09:47 조회수 327 등록자 임수민

✓ 민원사무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민원내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지제8호
✓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소방완비증명서 1부. 4. 화재배상책임보험 5. 전기안전점검필증 6. 게임물등급필증(청소년게임제공업 있을 시) 7.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8.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 처리부서	문화예술과
✓ 협의부서	건축과
✓ 접수	민원지적과
✓ 수수료	조례
✓ 처리기간	3일
✓ 기타사항	
✓ 흐름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 기타참고사항	

<p>첨부파일</p> <p>전체(Zip)다운로드</p>	<p> [별지 제8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279 hit/ 52.0 KB) ↓</p> <p>미리보기</p>
--	---

이전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다음글

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Yeosu Web Contents

